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863
----------	-------

발의연월일 : 2026. 3. 30.

발 의 자 : 박희승 · 백선희 · 윤준병
조인철 · 박용갑 · 어기구
김병주 · 서영교 · 서영석
이학영 · 정준호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법」에서는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 신문·인터넷 신문 또는 정기간행물, 현수막, 벽보, 전단 및 교통시설·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것이나 전광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나 광고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에는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가 있으며 이들 단체는 심의 대상 진료과목이 의학, 치의학, 한의학 중 어떠한 영역에 해당되는지 혹은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누구인지 등에 따라서 의료광고 심의업무를 분할하여 담당하고 있으며, 의료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분기별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있음.

그러나 의료광고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사후조치는 미흡한 수준으로 파악되었음.

보건복지부는 2023년 12월 11일부터 2024년 2월 13일까지 약 2달간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시행한 결과, 모니터링 전체 409건 중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불법 의료광고 건수가 366건에 해당하는 바, 의료광고 관리 및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모니터링과 적절한 조치는 불법 광고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매우 중요함에 비하여 기존의 자율심의기구 형태가 다양한 의료기관의 규모와 전문·요양·재활 등 갈수록 세분화·전문화되는 의료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심의·관리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음.

이처럼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관리 강화와 의료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자율심의기구의 역할 개선과 함께 일정수준의 공신력을 확보한 법정단체를 자율심의기구로 지정하는 조치가 병행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단체를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로 추가 지정하여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관리기관을 확대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표하는 법정단체에 병원에 대한 교육·홍보와 모니터링 기능을 제고하는 등 의료광고에 대한 정책·관리를 강화하여 불법 의료광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7조 및 제57조의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2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아니하며, 제2항제2호에”를 “아니하고, 제2항제2호에 따른 자율심의기구가 수행하는 의료광고 심의 업무 및 이와 관련된 업무의 수행에 관하여는 제83조제1항 및 「민법」 제37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2항제3호에”로 한다.

2.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단체(치과병원단체 및 한방병원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7조의2에서 같다)

제57조의2제2항제1호 중 “병원, 병원의 개설자, 요양병원(한의학사가 개설한 경우는 제외한다), 요양병원의 개설자, 정신병원, 정신병원의 개설자, 종합병원(치과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종합병원의 개설자, 조산사”를 “조산사”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병원의료광고심의위원회: 병원, 병원의 개설자, 요양병원(한의학사가 개설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요양병원의 개설자, 정신병원, 정신병원의 개설자, 종합병원(치과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종합병원의 개설자가 하는 의료광고의 심의

제57조의2제3항 중 “자율심의기구”를 “자율심의기구는 제2항제4호에 따른 심의위원회만 설치·운영하며, 제5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율심의기구”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제5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를 “제5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로, “제4호부터 제9호까지”를 “제5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3호부터 제9호까지”를 “제3호부터 제10호까지”로, “제4호부터 제9호까지”를 “제5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및 제4호부터 제9호까지”를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항 제4호부터 제9호까지”를 “항 제5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병원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항 제5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람을 각각 1명 이상 포함하되, 같은 항 제5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람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제57조의2제5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7조(의료광고의 심의) ① (생략)	제57조(의료광고의 심의)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심의를 위한 조직등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한 후 의료광고 심의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신설>	2.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단체(치과병원단체 및 한방병원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7조의2에서 같다)
2. (생략)	3. (현행 제2호와 같음)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2항제1호에 따른 자율심의기구가 수행하는 의료광고심의 업무 및 이와 관련된 업무의 수행에 관하여는 제29조제3항, 제30조제1항, 제32조, 제83조제1항 및 「민법」 제37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2항제2호에 따른 자율심의기구가 수	⑥ ----- ----- ----- ----- ----- -----아니하고, 제2항제2호에 따른 자율심의기구가 수

행하는 의료광고 심의 업무 및 이와 관련된 업무의 수행에 관하여는 「민법」 제3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 ⑪ (생략)

제57조의2(의료광고에 관한 심의위원회) ① (생략)

② 심의위원회의 종류와 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의사, 의원, 의원의 개설자, 병원, 병원의 개설자, 요양병원(한 의사가 개설한 경우는 제외한다), 요양병원의 개설자, 정신병원, 정신병원의 개설자, 종합병원(치과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종합병원의 개설자, 조산사, 조산원, 조산원의 개설자가 하는 의료광고의 심의

2. 3. (생략)

행하는 의료광고 심의 업무 및 이와 관련된 업무의 수행에 관하여는 제83조제1항 및 「민법」 제37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2항제3호에-----

⑦ ~ ⑪ (현행과 같음)

제57조의2(의료광고에 관한 심의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조산사

2. 3.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5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율심의기구 중 의사회는 제2항제1호에 따른 심의위원회만, 치과의사회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심의위원회만, 한의사회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심의위원회만 설치·운영하고, 제5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율심의기구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의위원회만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4. 병원의료광고심의위원회: 병
원, 병원의 개설자, 요양병원
(한의사가 개설한 경우는 제
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
다), 요양병원의 개설자, 정신
병원, 정신병원의 개설자, 종
합병원(치과는 제외한다. 이
하 이 호에서 같다), 종합병
원의 개설자가 하는 의료광고
의 심의

③ -----

-----자율심의기
구는 제2항제4호에 따른 심의
위원회만 설치·운영하며, 제57
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율심의
기구는-----

-----.

④ _____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2항 각 호의 심의위원회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

1.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5항 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람을 각각 1명 이상 포함하되, 같은 항 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람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2. 치과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5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람을 각각 1명 이상 포함하되, 같은 항 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람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3. 한방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5항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람을 각각 1명 이상 포함하되, 같은 항 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람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

-----.

1. -----제5항
제2호부터 제10호까지-----

-----제5호부터 제10호까
지-----

-----.

2. -----
-----제3호부터 제10
호까지-----
-----제5호
부터 제10호까지-----

-----.

3. -----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
-----항 제
5호부터 제10호까지-----

-----.

<u><신 설></u> ⑤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자율심의기구의 장이 위촉한다. 1. ~ 3. (생 략) <u><신 설></u> <u>4. ~ 9.</u> (생 략) ⑥ (생 략)	<u>4. 병원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항 제5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람을 각각 1명 이상 포함하되, 같은 항 제5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람이 전체 위원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u> ⑤ ----- ----- ----- -----. 1. ~ 3. (현행과 같음) <u>4.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u> <u>5. ~ 10.</u> (현행 제4호부터 제9호까지와 같음) ⑥ (현행과 같음)
--	--